

의안 번호	2180	【울산광역시 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: 2023. 11. 9.(목)
- 제출자: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: 2023. 11. 9.(목)
- 위원회 심사일자: 2023. 12. 6.(수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전도시국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구청장의 책무,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실태조사,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지원기준,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9조)

### 다. 근거법규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3조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홍정식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위한 조례 제정 사항으로
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근 거 법 규

##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## 「자연재해대책법」

**제3조(책무)**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(이하 “재난관리책임기관”이라 한다)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
2. 풍수해 예방 및 대비
  - 가. 삭제 <2017.10.24>
  - 나. 수방기준 제정·운영
  - 다.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·운영
  - 라. 내풍(耐風)설계기준 제정·운영
  - 마.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